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및 관리·감독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91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4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9
2. 주요 항목별 검토	10
가. 제명	10
나. 정의(안 제2조)	11
다. 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안 제7조)	14
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안 제8조)	17
마.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안 제10조)	18
바. 보험가입 등(안 제12조)	23
사.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안 제13조)	25
아. 영업정지 등(안 제15조)	26
자. 보고 및 검사 등	29
차. 부칙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체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결혼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나 택시도의 대여, 결혼사진의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 등의 일명 ‘웨딩패키지’ 상품의 구매와 결혼식장, 폐백, 예물이나 혼수 등의 구매 알선 등 결혼식과 관련된 준비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소관 법령이 없는 자유업종임.

결혼서비스는 ‘웨딩패키지’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함에도 업체별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¹⁾, 상품구조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품은 결혼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개별 업체가 결혼서비스 업체에 납품을 하고, 대행 업체는 여기에 플래너 비용 등의 마진을 더해 ‘웨딩패키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패키지 상품의 가격만을 알 수 있을 뿐 개별 업체의 공급가격은 알 수가 없는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

1)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결혼서비스 가격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계약 기준, 전국 예비부부들의 결혼서비스(결혼식장 대관료, 식대 등을 포함한 결혼준비대행 패키지) 총 계약금액은 전국 평균 2,101만 원으로, 결혼준비대행 패키지(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계약금액의 중간가격은 290만원 이었음. 조사대상 522개 결혼서비스 업체의 가격정보 공개율은 36.4%였으며, 결혼식장의 공개율이 45.9%로 결혼준비대행(13.2%)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가 비용 부담이나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의 성격을 띠므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기능과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한계가 있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건수는 4,78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상담 사유 중에서는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766건(57.8%), ‘계약불이행·품질’이 880건(18.4%), ‘청약철회 거부’가 677건(14.1%)으로 나타났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불만 접수 추이 >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까지	계
접수건수	1,038	1,332	1,505	913	4,788
전년대비 증가율	-41.8 (‘20년 코로나19영향)	28.3	13.0	14.4 (‘23년 동기간대비)	

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상담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

상담사유	계약 관련 (4,323건 90.3%)			기타*	계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품질	청약철회 거부		
접수건수 (비율)	2,766 (57.8)	880 (18.4)	677 (14.1)	465 (9.7)	4,788 (100.0)

* 가격/요금, 표시·광고, 약관 등

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²⁾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비자의 80% 이상이 결혼준비대행 패키지 상품(전부 또는 일부)을 이용하였으며, 패키지 상품(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묶음)의 경우 기본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추가금³⁾을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패키지 상품 이용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금액의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및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지적되었음⁴⁾.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품을 결혼박람회⁵⁾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⁵⁾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고, 선불식 할부계약

- 2)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24.11,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중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 2024.5. ~ 2024.11.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시행
 - 2,000여개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 온라인 자료수집(웹 크롤링) 등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3) 결혼서비스 추가금 발생 비율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묶음) 87.8%, (결혼식장) 35.3%
 ⇨ 스·드·메 묶음상품의 경우 기본금의 약 50% 추가(기본 346만원, 추가 174만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시 구체적인 환불기준 미고지 비율 : 37.3%
 [결혼서비스 실태조사(‘24.5~’24.11) 주요 결과, 기획재정부]
- 4) [참고자료 1]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24.11,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중 결혼서비스 실태조사결과).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을 통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⁶⁾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계약을 한 경우나 해지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결혼서비스업은 신고나 등록의 대상도 아니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부재하여 계약의 미이행, 계약과 다른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추가 금액의 발생, 세부 가격의 미공개 등의 소비자 피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한편,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24. 11. 14.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표준약관 제정 및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점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등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 실태

-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조사, 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보험가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시장 규제의 신설로 업계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해당 규제가 신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제정안의 개별 조항들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서울특별시·경기도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명으로, 본칙 19개의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 >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결혼서비스업자의 책무
제6조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제7조	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
제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9조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
제10조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제11조	표준계약서
제12조	보험가입 등
제13조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
제14조	시정명령
제15조	영업정지 등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제17조	벌칙
제18조	양벌규정
제19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2. 주요 항목별 검토

가. 제명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서 표준계약서,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을 “결혼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가 직접 목적이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 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보험가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목적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제명은 ‘결혼서비스업법’ 또는 ‘결혼서

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와 “결혼서비스업”, “공공예식장”을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의 범위를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서비스”란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결혼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혼중개는 제외한다. 2. “결혼서비스업”이란 결혼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영업 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공공예식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예식공간을 말한다.

제정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결혼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결혼중개는 제외)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관리체계 대상(신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 보험가입 등)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결혼서비스의 범위 중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등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결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그 외의 경우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서비스업의 범위 및 관리 수준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의 구조를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된 사진촬영 업체, 드레스 대여 및 미용 등의 업체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되는데,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계약내용의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민법상 ‘이행보조자’⁷⁾에 해당함.

제정안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은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서비스업에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등의 업을 결혼서비스업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휴업체의 범위와 거래형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은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봄. 즉 “결혼식 준비 일체”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소비자가 결혼식 준비를 대행시키는 경우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 모두를 대행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결혼식과 관련한 제반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식과 관련한 제반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혼식과 관련한

7)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반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키는 경우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 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제정안의 정의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기도는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안 제7조)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 ①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제 정 안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등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다수의 웨딩플래너를 고용한 법인사업자 형태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⁸⁾에서도 결혼 준비, 기획 및 대행, 결혼상담, 알선 등이 모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등 정확한 사업체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관리체계하

8)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 예식장업, 결혼중개업 등은 대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상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 중 예식장업은 별도의 소분류 항목이 있으나, 그 외의 업종은 모두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분류코드 96994)에 포함되어 있음.

에 포섭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의 신고요건 중 시설 외의 요건은 어떠한 신고 요건을 정할 것인지를 모두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수범자인 국민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자본금 등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신고수리의 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전라북도 및 강원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중복적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결혼식장대여업자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로 하여금 해당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소

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신고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고필증 게시·소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전북(2024. 1.)과 강원(2023. 6.)이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혼동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안 제8조)

제정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의 사업 양도, 사망,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와 (안 제8조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사업자 지위 승계(안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 정 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의 양도나 상속, 합병 등의 경우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므로 영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혼식장대여업자 등의 지위 승계 조항은 필요하다고 봄.

다만, 제정안은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선의의 승계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와 승계 기간, 대상 및 승계 제외 사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마.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안 제10조)

제정안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안 제10조), 이

를 위반하는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4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⁹⁾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한 경우 제15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결혼서비스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결혼준비대행 계약 체결 이후 실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되는 등의 관행을 방지하는

9) 안 제7조(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에서 신고대상을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에 관한 사항은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게만 해당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제재는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결혼서비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대상을 결혼서비스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또한,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¹⁰⁾는 사업자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7조¹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대상¹²⁾으로 하고, 위반행위자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¹³⁾을 부과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의 벌금¹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혼서비스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제재의 수준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¹⁵⁾은 결혼중개업자에게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시정명령은 결혼서비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 주체 또한 “누구든지”가 아닌 “결혼서비스업자”로 수정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바. 보험가입 등(안 제12조)

제정안은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 정 안
제12조(보험가입 등)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

제 정 안
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2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의 위반 등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봄.

다만, 제정안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청구 절차를 대통령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안 제13조)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무상 이용, 사용료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공공예식장의 개방 등)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유희시간에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무상 이용,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식 비용의 절감과 결혼 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은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무상 사용,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 주체와 무상 사용·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⁶⁾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가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34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예식장의 사용료 감면 등이 예식장 운영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 영업정지 등(안 제15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결혼서비스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제 정 안
제15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의 대상을 결혼서비스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결혼식장대여업 등의 신고)에서 신고대상을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의 대상을 결혼서비스업자로 명시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 제15조제1항 단서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및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의 여지 없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를 당연 폐쇄명령 사유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안 제14조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유사입법례¹⁷⁾를 참고하여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위

1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반으로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고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영업소 폐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고려하여 영업소 폐쇄 후 일정 기간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신고 제한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는바,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포함하고, 처벌규정¹⁸⁾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 보고 및 검사 등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보고와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

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리·감독 등을 위해서는 보고 및 검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차. 부칙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식장 대여 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식장 대여 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 부칙 제2조는 기존에 결혼식장 대여 서비스 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 수 있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음.

새로 도입되는 신고제의 계도·홍보 및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의 신고 요건 구비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24.11,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중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2,000여개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 온라인 자료수집(웹 크롤링) 등 실시

* 조사대상 : 2023~2024년 결혼한 신혼부부 995쌍, 9개 온라인플랫폼 조사 → 준비대행 200여개사, 예식장 600여개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각 500여개사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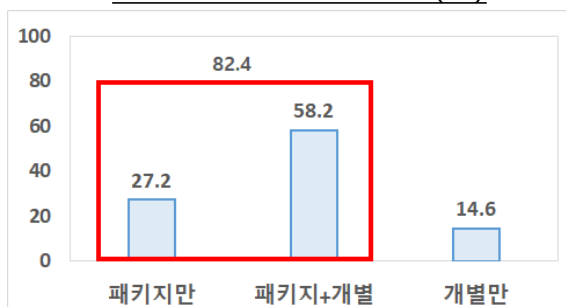
- (이용상품) 소비자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예식장 외에 스튜디오 촬영(86.1%), 드레스(91.7%), 메이크업(91.8%) 서비스 이용

- 분식 스냅(67.0%), 분식 영상(48.5%), 예복(59.5%), 한복(53.7%)도 이용비율이 높은 편(※ 부케 등 기타서비스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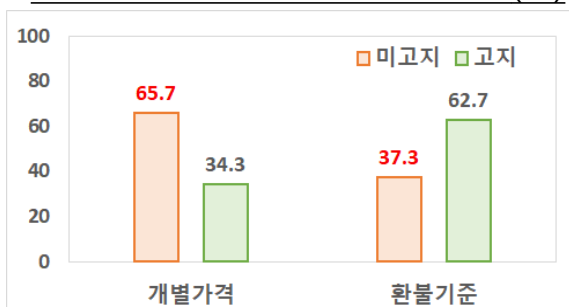
- (거래방식) 82.4%의 소비자가 패키지 상품(전부 또는 일부)을 이용, 패키지 이용자 중 개별가격을 고지받은 경우는 34.3%에 불과

-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시 계약금으로 평균 827만원 지불
○ 계약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한 비율은 37.3%이고, 환불가능 기간은 15일 이하가 41.1%(7일 이하 25.5%)로 조사

결혼서비스 구매 방식(%)



개별가격 및 환불기준 고지 여부(%)



- (가격동향)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고, 이 중 약 2,300만원을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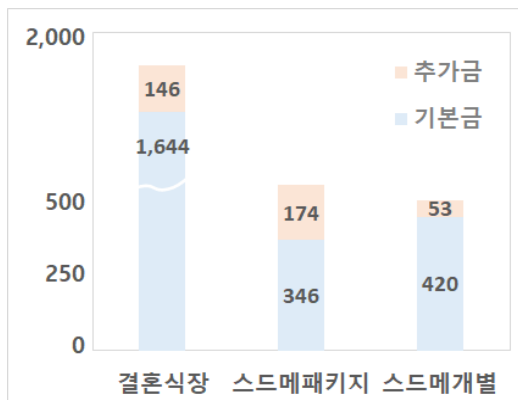
- 결혼식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본금 1,644만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 추가금 174만원 지불
○ 스·드·메 패키지 상품 이용시, 서비스를 개별 구매하는 경우보다 최종 지불금액이 크고 추가금 비중도 확대*

* 최종 지불금액 : (패키지) 510만원 vs. (개별구매) 473만원
기본금 대비 추가금 비중 : (패키지) 50.3% (개별구매)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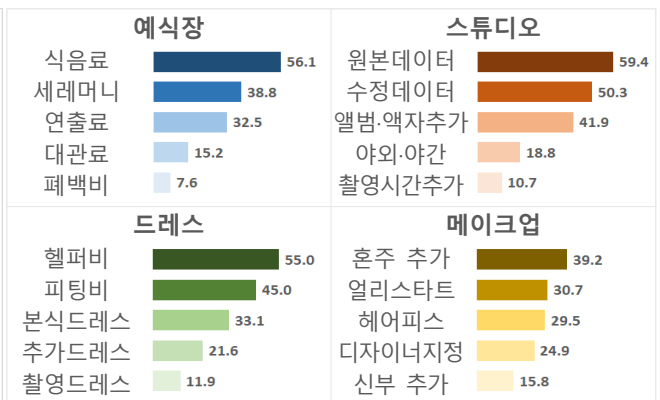
- 드레스 헬퍼 비용 별도 지급 요구(평균 29.1만원), 스튜디오 촬영시 간식 구매 관행 등도 부담으로 작용
- 한편,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업체도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는 다소 격차* 존재

* 온라인 웨딩 플랫폼에 공개된 스토메 패키지의 기본금은 평균 199만원 vs.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기본금 평균 346만원, 최종 지불액 평균 520만원
↳ 플래너 포함, 개별 소비자의 선호업체 포함, 추가품목 구매 등 영향

기본금 및 추가금 규모(만원)



추가금 항목별 이용 비율(%)



□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고,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으로 조사

- 한편, 전반적으로 패키지 상품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모습
- 불만사항으로 과도한 추가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및 사전 고지 부족(5.3%) 등을 주로 지적
- 플래닝 서비스(6.6%), 현금지불(5.8%)에 대한 불만족도 많은 편

패키지 상품 이용 여부에 따른 불만족 비율(%)

	패키지	비패키지
예식장	8.9	6.9
스튜디오	18.1	6.3
드레스	9.6	3.3
메이크업	7.7	7.4

주요 불만사항(%)

